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85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내역 목록 기재 각 등록세, 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947,130,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가. 원고는 2007. 8. 2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있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빌딩 [redacted]층으로 이전하고 2007. 8. 22. 본점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9. 12.부터 2012. 2. 24.까지 전환사채행사, 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본점이전 및 자본증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순번	행위	세목	금액(단위 : 원)	
1	2007. 8. 22. 본점전입	등록세	75,000	90,000
		지방교육세	15,000	
2	2007. 9. 12. 자본증가 (378,500원)	등록세	98,000	117,600
		지방교육세	19,600	
3	2007. 9. 19. 자본증가 (777,344,000원)	등록세	3,109,380	3,731,260
		지방교육세	621,880	
4	2008. 6. 23. 자본증가 (4,400,000,000원)	등록세	17,600,000	21,120,000
		지방교육세	3,520,000	
5	2008. 7. 1. 자본증가 (1,480,468,500원)	등록세	5,921,870	13,901,870
		지방교육세	7,980,000	
6	2008. 7. 31. 자본증가 (1,995,000,000원)	등록세	7,980,000	9,576,000
		지방교육세	1,596,000	
7	2008. 9. 30. 자본증가 (5,000,000,000원)	등록세	20,000,000	24,000,000
		지방교육세	4,000,000	
8	2008. 12. 16. 자본증가 (11,500,000,000원)	등록세	46,000,000	55,200,000
		지방교육세	9,200,000	
9	2008. 12. 23. 자본증가 (1,999,000,000원)	등록세	7,996,000	9,595,200
		지방교육세	1,599,200	
10	2009. 10. 19. 자본증가 (2,631,578,500원)	등록세	10,526,310	12,631,570
		지방교육세	2,105,260	
11	2009. 11. 4. 자본증가 (999,000,000원)	등록세	3,996,000	4,795,200
		지방교육세	799,200	
12	2010. 3. 17. 자본증가 (826,400,000원)	등록세	3,305,600	3,966,720
		지방교육세	661,120	
13	2010. 5. 31. 자본증가 (17,000,000,000원)	등록세	68,000,000	81,600,000
		지방교육세	13,600,000	
14	2012. 2. 24. 자본증가 (416,500,000원)	등록세	416,500,000	416,833,200
		지방교육세	333,200	
합 계				657,158,6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다.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이러한 본점이전 및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에 정해진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등록세, 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이 위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를 한 때에는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매 1건당 75,000원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의 거래처로부터 원피와 원피를 가공하기 위한 약품을 수입하고 이를 자회사인 중국청도법인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까지 원피 수출입업 외에 피혁원단 제조업도 영위하였으나, 2004. 12.경 국내에서의 제조업을 중단하였고 2005년부터 중국청도법인에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였다.

나) 원고의 업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한국거래소는 '상품중개업', 한국경제신문은 '유통업', 매일경제신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상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은 '천연, 재생, 합성, 대용가죽 및 천연, 인조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는 위 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어 있다.

라) 통계청이 제작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는 '도매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ㅇ 개요 (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산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2)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3)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음 ㅇ 형태 (1) 도매업 :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음 *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 (2) 상품중개업 :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업종의 분류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 해석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출입의 대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삼고 있는 원피는 축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가공약품은 공산품에 해당되며, 원고는 해외의 거래처로부터 원피와 가공약품을 수입하여 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는 수출입업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업종은 축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 중소유통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수출입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어디에도 위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국내에서의 유통에 한정시킨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위 법 제3조 제6호가 정부는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4조는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수출입업에 대하여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뚜렷한 근거 없이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도매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수출입업과 함께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2.경 국내에서의 제조업을 중단하였고 2005년부터 중국청도법인에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였으므로, 제조업을 함께 영위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교육세, 가산세는 등록세액의 증감에 따라 이에 부가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교육세, 가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해진다)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별지

과세내역 목록

순번	행위	세목	금액	
1	중과차액분 (2007.8.22.본점전입)	등록세	115,143,780 원	236,212,020 원
		가산세	83,617,400 원	
		지방교육세	37,450,840 원	
2	중과차액분 (2007.9.12.자본증가)	등록세	150,000 원	306,570 원
		가산세	107,980 원	
		지방교육세	48,590 원	
3	중과차액분 (2007.9.19.자본증가)	등록세	6,218,720 원	12,694,660 원
		가산세	4,463,810 원	
		지방교육세	2,012,130 원	
4	중과차액분 (2008.6.23.자본증가)	등록세	35,200,000 원	68,333,050 원
		가산세	22,330,880 원	
		지방교육세	10,802,170 원	
5	중과차액분 (2008.7.01.자본증가)	등록세	11,843,750 원	22,957,920 원
		가산세	7,485,250 원	
		지방교육세	3,628,920 원	
6	중과차액분 (2008.7.31.자본증가)	등록세	15,960,000 원	30,764,490 원
		가산세	9,943,080 원	
		지방교육세	4,861,410 원	
7	중과차액분 (2008.9.30.자본증가)	등록세	40,000,000 원	76,225,600 원
		가산세	24,188,000 원	
		지방교육세	12,037,600 원	
8	중과차액분 (2008.12.16.자본증가)	등록세	92,000,000 원	172,768,640 원
		가산세	53,507,200 원	
		지방교육세	27,261,440 원	
9	중과차액분 (2008.12.23.자본증가)	등록세	15,992,000 원	29,991,390 원
		가산세	9,267,360 원	
		지방교육세	4,732,030 원	
10	중과차액분 (2009. 10. 19.자본증가)	등록세	21,052,630 원	37,208,390 원
		가산세	10,305,250 원	
		지방교육세	5,850,510 원	
11	중과차액분	등록세	7,992,000 원	14,079,020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2009.11.4.자본증가)	가산세	3,873,720 원	
		지방교육세	2,213,300 원	
12	중과차액분 (2010.3.17.자본증가)	등록세	6,611,200 원	11,330,000 원
		가산세	2,940,660 원	
		지방교육세	1,778,140 원	
13	중과차액분 (2010.5.31.자본증가)	등록세	136,000,000 원	229,399,360 원
		가산세	57,432,800 원	
		지방교육세	35,966,560 원	
14	중과차액분 (2012.2.24.자본증가)	등록세	3,332,000 원	4,859,780 원
		가산세	773,350 원	
		지방교육세	754,430 원	
합 계				947,130,890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별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끝.